

---

# 2022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윤리·인권경영 종합보고서

---

2022. 12.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목 차

|                        |    |
|------------------------|----|
| I. 윤리·인권경영 추진개요        |    |
| 1. 관련근거 .....          | 3  |
| 2. 추진배경 .....          | 3  |
| 3. 추진체계 .....          | 3  |
| 4. 윤리·인권경영 추진경과 .....  | 5  |
| II. 세부 추진사항            |    |
| 1. 윤리·인권경영체계 구축 .....  | 7  |
| 2. 윤리·인권영향평가 실시 .....  | 8  |
| 3. 청렴도 및 갑질 실태조사 ..... | 20 |
| 4. 모범거래 모델 도입 .....    | 23 |
| 5. 기타 추진현황 .....       | 29 |
| III. 총 평 .....         | 32 |

# **I . 윤리·인권경영 추진개요**

# I. 윤리·인권경영 추진개요

## 1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 8.)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지침
- 2022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윤리·인권경영 종합 운영계획(2022. 5.)

## 2 추진배경

- 정부는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을 정부경영평가 별도 지표로 신설하는 한편 인권경영 매뉴얼을 전 공공기관에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공단은 인권위 인권경영 매뉴얼을 반영하는 등 ‘2022년 윤리·인권경영 종합 운영계획(2022.5.)’ 을 수립하여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하고자 함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공단 내·외부 인권 존중 및 보호에 앞장서 구민과 공단 전 직원의 신뢰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모범이 되기 위하여 인권친화경영에 앞장서고자 함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공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실재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단 인권경영 분야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함

## 3 추진체계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추진체계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전략

| <p><b>목표</b></p>          | <p>윤리경영 시스템화를 통한<br/>청렴한 사회 구현</p>  |   | <p>대내외 이해관계자 중심의<br/>인권경영 실천</p>                            |  |     |          |          |    |         |    |    |  |              |       |       |  |         |       |        |            |        |     |      |  |
|---------------------------|---|---|---|--|-----|----------|----------|----|---------|----|----|--|--------------|-------|-------|--|---------|-------|--------|------------|--------|-----|------|--|
| <p><b>중장기<br/>로드맵</b></p> | <p>2019 ~ 2020년</p>   | <p>2021 ~ 2022년</p>   | <p>2023년~</p>   |  |     |          |          |    |         |    |    |  |              |       |       |  |         |       |        |            |        |     |      |  |
|                           | <p>윤리인권경영<br/>기반 구축</p>   | <p>시스템 정비 및<br/>공유·확산</p>   | <p>윤리인권경영<br/>강화 및 지속</p>                                   |  |     |          |          |    |         |    |    |  |              |       |       |  |         |       |        |            |        |     |      |  |
| <p><b>추진 방향</b></p>       | <p><b>제도 혁신</b></p>   | <p><b>반부패체계 고도화</b></p>   | <p><b>인권존중문화 확산</b></p>                                     |  |     |          |          |    |         |    |    |  |              |       |       |  |         |       |        |            |        |     |      |  |
|                           | <p>규범, 시스템 개선<br/>등의 제도 개선 및<br/>혁신을 통한 공단<br/>운영의 투명성 강화</p>   | <p>부패방지 및<br/>윤리경영체계<br/>고도화로 부패사건<br/>ZERO 달성</p>  | <p>인권경영 의식수준 향상과<br/>이해관계자들의<br/>인권 제고를 통한<br/>인권 문화 확산</p> |  |     |          |          |    |         |    |    |  |              |       |       |  |         |       |        |            |        |     |      |  |
| <p><b>중점 과제</b></p>       | <p><b>제도혁신</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인권경영 관련 내부 규범 점검</li> <li>❖ 반부패 관련 시스템 인증 관리</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p><b>반부패체계 고도화</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감찰 및 감사 강화로 부패 근절</li> <li>❖ 맞춤형 교육 실시를 통한 담당자 역량 증진</li> <li>❖ 다양한 청렴 활동으로 주기적인 청렴 인식 개선</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p><b>인권존중문화 확산</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고도화 추진</li> <li>❖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li> <li>❖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과 외부 공유 및 확산</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p><b>실행 체계</b></p>       | <p><b>조직</b></p>  | <p>[내부] 감사평가팀, 청탁방지담당관 [외부] 인권경영 위원회</p>  |   |  |     |          |          |    |         |    |    |  |              |       |       |  |         |       |        |            |        |     |      |  |
|                           | <p><b>규범</b></p>  | <p>[윤리] 윤리헌장, 임직원행동강령, 부패관련 신고처리 지침 등<br/>[인권] 인권경영 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직장 내 괴롭힘 예방내규</p>   |   |  |     |          |          |    |         |    |    |  |              |       |       |  |         |       |        |            |        |     |      |  |
|                           | <p><b>모니<br/>터링</b></p>   | <p>[내부] 내부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외부] 사천시, 반부패 관련 인증 심사</p>  |   |  |     |          |          |    |         |    |    |  |              |       |       |  |         |       |        |            |        |     |      |  |
| <p><b>자체<br/>성과지표</b></p>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2021년 실적</th> <th style="width: 25%;">2022년 목표</th> <th style="width: 2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부패사건 발생</td> <td>0건</td> <td>0건</td> <td></td> </tr> <tr> <td>ISO 37001 인증</td> <td>신규 인증</td> <td>인증 유지</td> <td></td> </tr> <tr> <td>경영평가 지표</td> <td>76.5점</td> <td>80점 이상</td> <td>2020년 평가기준</td> </tr> <tr> <td>과제 이행률</td> <td>90%</td> <td>100%</td> <td></td> </tr> </tbody> </table> |   |   |  | 구 분 | 2021년 실적 | 2022년 목표 | 비고 | 부패사건 발생 | 0건 | 0건 |  | ISO 37001 인증 | 신규 인증 | 인증 유지 |  | 경영평가 지표 | 76.5점 | 80점 이상 | 2020년 평가기준 | 과제 이행률 | 90% | 100% |  |
| 구 분                       | 2021년 실적  | 2022년 목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부패사건 발생                   | 0건  | 0건  |   |  |     |          |          |    |         |    |    |  |              |       |       |  |         |       |        |            |        |     |      |  |
| ISO 37001 인증              | 신규 인증   | 인증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평가 지표                   | 76.5점   | 80점 이상  | 2020년 평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과제 이행률                    | 90%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4 윤리·인권경영 추진 경과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윤리·인권경영 추진 경과(2018 ~ 2022)

- 2018 | 08월 09일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수신  
10월 27일 2018년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및 전담조직 지정  
12월 16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지침 제정
- 2019 | 01월 31일 인권경영선언문 제정 및 공유  
12월 16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중장기 인권경영 전략 수립
- 2020 | 08월 04일 2020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10월 15일 2020년 인권영향평가 용역 실시  
12월 12일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수령  
12월 18일 2020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12월 21일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공유 및 전파
- 2021 | 02월 08일 2021년 비대면 내부간담회 개최(인권경영선언문 낭독)  
07월 06일 2021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08월 09일 2021년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10월 27일 2021년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11월 08일 2021년 제2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11월 19일 2021년 제3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12월 08일 2021년 제4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12월 15일 2021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공유 및 전파
- 2022 | 05월 08일 2022년 윤리·인권경영 종합 운영계획 수립  
10월 14일 2022년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11월 08일 2022년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11월 22일 2022년 제2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11월 30일 2022년 제3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12월 02일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 **II . 세부 추진사항**

## Ⅱ. 세부 추진사항

### 1 윤리·인권경영체계 구축

□ 인권경영 지침 제정(2018. 12. 16.)

- 주요내용: 인권경영에 대한 기본원칙 및 체계, 인권경영위원회, 구제 절차, 인권영향평가 등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재구성(2022. 10. 14.)

- 구성인력: 총 8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4명) / 간사: 경영기획팀장

| 구 분  |       | 성 명   | 비 고                |
|------|-------|-------|--------------------|
| 외부위원 | 위 원 장 | 설 ○ 우 | 前 동서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
|      | 위 원   | 신 ○ 해 | 前 사천시 여성협의회장       |
|      | 위 원   | 이 ○ 정 | 장애인 부모회 회장         |
|      | 위 원   | 정 ○ 훈 | 백경건설 대표            |
| 내부위원 | 위 원   | 하 ○ 삼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
|      | 위 원   | 홍 ○ 표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시설팀장 |
|      | 위 원   | 강 ○ 수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
|      | 위 원   | 강 ○ 숙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노조추천 직원  |

○ 주요기능

- 인권경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책제언 등 대안·권고 제시
-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결과에 대한 인권 리스크 분석 및 조치사항 권고
-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그 외 이사장 및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공단 인권경영 선언문 이행 검토

- 추진목적: 인권경영 선언문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
- 추진실적
  - 체크리스트를 통한 인권경영 선언문 항목별 이행현황 점검
  - 현 인권경영 선언문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

## ② 인권영향평가 실시

### □ 인권영향평가 개요

- 평가기간: '22. 11. 10.(목) ~ 11. 18.(금) / 9일간
- 평가대상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공단의 경영활동 전반
    - ※ 인권경영 10개 분야, 158개 지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공단의 주요 사업활동(사천바다케이블카)
    - ※ 인권경영 4개 분야, 23개 지표
- 평가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8명(내부 4명, 외부 4명)
- 평가방법: 지표별 현황보고서 기준 서면평가, (필요시)현장평가

### □ 평가기준

- 평가 및 등급산출 기준
  - 평가기준

| 구분 | 예  | 보완필요 | 아니오 | 정보없음* | 해당없음* |
|----|----|------|-----|-------|-------|
| 점수 | 2점 | 1점   | 0점  | 평가제외  | 평가제외  |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정보없음, 해당없음)에 대해서는 평가제외

\* 정보없음: (미래에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관련 정보 없음

\* 해당없음: 공단 사업범위 및 업무내용과 상이하여 관련 내용 없음

- 각 분야별 총 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인권영역별 등급 산출

- 등급산출 기준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
| 평점 | 100점 ~ 90점 | 90점미만 ~ 80점 | 80점미만 ~ 70점 | 70점미만 ~ 60점 | 60점미만 ~ 50점 | 50점미만 ~ 40점 | 40점미만 ~ 30점 | 30점미만 ~ 20점 | 20점미만 ~ 0점 |

□ 평가지표별 담당위원 구성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담당위원 지정

| 연번 | 대분류<br>(10개)        | 중분류<br>(33개)          | 지표<br>(158개) | 담당위원    |
|----|---------------------|-----------------------|--------------|---------|
| 1  | 인권경영 체제의<br>구축      | ❖ 인권존중 정책 선언          | 6            | 설○우 위원장 |
|    |                     |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6            |         |
|    |                     |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5            |         |
|    |                     | ❖ 인권경영 성과             | 7            |         |
|    |                     | ❖ 구체절차 마련             | 6            |         |
| 2  | 고용상의 비차별            | ❖ 고용상의 비차별            | 5            | 이○정 위원  |
|    |                     | ❖ 고용상 남녀 비차별          | 6            |         |
|    |                     |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3            |         |
|    |                     | ❖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 3            |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br>자유 보장 | ❖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 4            | 정○규 위원  |
|    |                     |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5            |         |
|    |                     |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5            |         |
|    |                     | ❖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 2            |         |
| 4  | 강제 노동의 금지           | ❖ 강제노동 금지             | 8            | 하○삼 위원  |
|    |                     | ❖ 거래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 3            |         |
| 5  | 아동노동의 금지            | ❖ 연소자 고용 금지           | 6            | 신○혜 위원  |
|    |                     | ❖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 8            |         |
| 6  | 산업안전 보장             | ❖ 작업장 안전              | 5            | 박○은 위원  |
|    |                     |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4            |         |
|    |                     |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 5            |         |
|    |                     | ❖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 3            |         |
| 7  | 책임 있는 공급망<br>관리     | ❖ 거래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4            | 정○훈 위원  |
|    |                     | ❖ 모니터링 실시             | 2            |         |
|    |                     | ❖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4            |         |
| 8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 7            | 설○우 위원장 |
|    |                     | ❖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 3            |         |
| 9  | 환경권 보장              | ❖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 5            | 홍○표 위원  |
|    |                     | ❖ 환경정보의 공개            | 3            |         |
|    |                     |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접근의 원칙  | 5            |         |
|    |                     | ❖ 비상계획 수립             | 5            |         |
| 10 | 소비자 인권 보호           |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 6            | 정○훈 위원  |
|    |                     | ❖ 제품 결함 시 조치          | 3            |         |
|    |                     | ❖ 소비자 사생활 보호          | 6            |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담당위원 지정

| 연번 | 대분류<br>(4개) | 중분류<br>(10개) | 지표<br>(23개) | 담당위원    |
|----|-------------|--------------|-------------|---------|
| 1  | 노동환경        | ❖ 인권역량강화     | 2           | 정○규 위원  |
|    |             | ❖ 노동권 보장     | 4           |         |
| 2  | 이용객 보호      | ❖ 안전보장       | 3           | 설○우 위원장 |
|    |             | ❖ 접근성 보호     | 3           |         |
|    |             | ❖ 사생활보호      | 2           |         |
|    |             | ❖ 지식재산권 보호   | 1           |         |
| 3  | 공정운영        | ❖ 공정계약       | 2           | 신○혜 위원  |
|    |             | ❖ 인권침해예방     | 2           |         |
| 4  | 고충처리        | ❖ 모니터링       | 2           | 박○은 위원  |
|    |             | ❖ 정책환류       | 2           |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 총평

| 구분           | 세부내용  |
|--------------|---|
| 정책·이행<br>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는 국제인권장전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이슈는 물론,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음</li> <li>- &lt;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 UNGPs&gt;이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인권존중 책임 준수를 위한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Due diligence) 이행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li> <li>- 인권경영 추진 기구, 전담 조직,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기구를 구축·운영 중에 있어, 공단 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다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다루는 데 필요한 조직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li> <li>- 다만 공단의 인권경영 의지와 임직원 및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기대를 보다 명확하게 표명하기 위해서는 인권정책 이행성과를 공개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li> </ul> |
| 조직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 인권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체험, 교육, 전시문화, 자료실 등의 복합적인 인권문화</li> </ul>   |

|      |  |
|------|--|
|      | <p>공간 운영, 지역 인권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와의 열린 소통 강화</p> <p>- 더불어 정례적인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단 정책과 시스템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인권존중 문화의 조직 내재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p>   |
| 핵심이슈 | <p>- 전체 158개 지표 중 ‘해당 없음’ 을 제외한 142개 지표에 대한 충족 정도를 나타내는 응답 분포는 예(75.9%), 보완 필요(12.9%), 정보없음(1.9%)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90.4점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절차 제공을 위한 인권실사 시스템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음</p> <p>- 인권경영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보다 활성화 하고, 고용상의 비차별,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공단 인권정책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신설·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p>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통계표

| 지 표                 | 누계<br>(지표별) | 예   | 보완필요 | 아니오 | 정보없음<br>해당없음 |
|---------------------|-------------|-----|------|-----|--------------|
| 합계                  | 158         | 120 | 19   | 3   | 16           |
|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30          | 25  | 1    | -   | 4            |
| 2. 고용상의 비차별         | 17          | 13  | 1    | -   | 3            |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6          | 16  | -    | -   | -            |
| 4. 강제 노동의 금지        | 11          | 10  | -    | 1   | -            |
| 5. 아동 노동의 금지        | 14          | 11  | 1    | -   | 2            |
| 6. 산업안전 보장          | 17          | 13  | 4    | -   | -            |
|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10          | 3   | 6    | 1   | -            |
|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10          | 5   | -    | -   | 5            |
| 9. 환경권 보장           | 18          | 14  | 3    | 1   | -            |
| 10. 소비자 인권 보호       | 15          | 10  | 3    | -   | 2            |

○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결과

| 지 표                 | 평가 점수 | 평가차트 |
|---------------------|-------|------|
| 계 (평균)              | 90.4  |      |
|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98.1  |      |
| 2. 고용상의 비차별         | 96.4  |      |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00   |      |
| 4. 강제 노동의 금지        | 90.9  |      |
| 5. 아동 노동의 금지        | 95.8  |      |
| 6. 산업안전 보장          | 88.2  |      |
|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60.0  |      |
|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100   |      |
| 9. 환경권 보장           | 86.1  |      |
| 10. 소비자 인권 보호       | 88.5  |      |

○ 분야별 평가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구분            | 세부내용  |
|---------------|---|
| 인권존중 정책 선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은 인권경영선언문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유관기관 공유 및 확산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의지를 표명하였음</li> <li>- 인권정책 이행을 위한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계약 상대방 선정 및 계약이행 과정에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영향권 내 사업체의 인권존중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li> </ul> <p>⇒ 향후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위원회, 외부 인권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정책 검토를 수행해 인권정책의 실효성 확보</p>            |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지침에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부터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li> <li>-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개발되었으며, 지표개발 과정은 물론 평가절차에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음</li> <li>- 평가 과정에 공단 인권경영 전담부서는 물론 유관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여하고, 공단 운영 및 사업관행으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li> </ul> |

|           |  |
|-----------|--|
|           | <p>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해 평가의 전문성과 실효성, 신뢰성을 확보하였음<br/>         ⇨ 전문기관에서 제공한 범용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공단 운영 및 사업 특성에 맞게 개선 활용</p>   |
| 인권경영 제도화  | <p>- 인권정책 준수 및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협의체 방식의 추진 기구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br/>         - 또한 인권경영 전담조직 지정과 기능,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 제공, 인권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임직원 인권교육 정례적 시행 근거를 인권경영지침에 명시함으로써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조직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음</p>   |
| 인권경영 성과관리 | <p>- 경영실적보고서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매뉴얼이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실행성과를 체계적이고 연도별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수록하고 있음<br/>         ⇨ 인권정책 이행성과를 홈페이지 등 공개된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활성화<br/>         ⇨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인권 리스크 예방 및 완화 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p>  |
| 구제절차 마련   | <p>- 인권경영지침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협의체 방식의 독립적인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기구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br/>         - 구제절차 시행의 근거가 되는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지침은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구제대상은 내부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고 있음<br/>         ⇨ 인권경영지침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1조(구성) 규정에는 외부위원 비중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현행 위원회 구성은 50%이하로 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필요<br/>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을 참고해 인권경영규칙 구제관련 조항 고도화로 구제절차의 실효성 보완</p> |

- 고용상의 비차별

| 구분           | 세부내용  |
|--------------|---|
| 고용상의 비차별     | - 인권경영선언문, 취업규정,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복지후생규정 등에 다층적으로 고용 상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실천하고 있음                      |
| 남녀 비차별       | -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복리후생, 정년퇴직, 해고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노동자 차별 금지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고 있음(취업규정) |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 인사규정, 전문계약직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라 고용형태별 인사 및 보수에 관한 별도규정을 마련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           |
|-------------------|-----------|
| 외국인<br>근로자<br>비차별 | - 해당사항 없음 |
|-------------------|-----------|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구분                        | 세부내용   |
|---------------------------|--|
| 결사·단체<br>교섭의<br>자유보장      | - 인경영선언문에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명시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노동조합 설립 신고<br>-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 위원의 활동 보장, 교섭사항 및 편의제공을 사용자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
| 노동조합<br>활동<br>불이익<br>처우금지 | -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 및 탈퇴할 수 있으며 쟁의활동 보장, 부당노동행위 방지 교육 및 상벌, 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자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 단체교섭<br>보장 및<br>성실한 이행    |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교섭원칙 및 교섭위원 구성 규정에 성실한 협의 의무를 명시하고, 주요 경영정보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쌍방통지 및 자료제출, 해고회피 노력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 노동조합<br>부재시<br>대안적 조치     | -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운영<br>- 노동조합 외 노사협의회 운영  |

- 강제노동의 금지

| 구분                  | 세부내용  |
|---------------------|---|
| 강제노동<br>금지          | - 인권경영선언문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금지를 명시하고, 노동관계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기준 준수를 표명<br>-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인사규정 시행내규, 취업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용규정 등에 강제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 |
| 거래회사에<br>강제노동<br>예방 | - 계약시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 아동노동의 금지

| 구분          | 세부내용   |
|-------------|--|
| 연소자<br>고용금지 | - 인권경영헌장에 모든형태의 아동노동 금지를 명시하고, 노동관계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기준 준수를 표명<br>-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채용연령 규정에 18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취업규정에 연소자의 야간 및 휴일근무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

- 산업안전 보장

| 구분             | 세부내용  |
|----------------|---|
| 작업장 안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선언문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 제공 명시하고 복리후생 규정에 안전과 보건 명시</li> <li>- 사천바다케이블카운영규정(제4장 케이블카 시설관리, 제5장 케이블카 안전 관리), 실내수영장(정기적인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공고), 야영장 및 저수장 정기적인 위생 점검, 실내공기질 인증 취득(사천바다케이블카, 실내수영장)</li> </ul> |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 취업규정 제25조(근무시간 등) 야간 및 휴일근무 금지, 제25조의2(임산부의 보호), 초과근무수당 운영관리지침 마련 및 시행(제5조-초과근무제한)으로 임산부 보호 정책 마련   |
| 필수장비 제공, 교육실시  | - 재난안전 계획 수립 및 시설별 담당자 지정, FMS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지자체 및 소방서 합동 재난 대비 훈련 실시, 물질안전보건 자료 정비,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
|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 - 복리후생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에 재해예방 및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구분                  | 세부내용   |
|---------------------|--|
| 거래회사 등 인권침해 예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 명시(인권경영지침 제9조)</li> <li>-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중 인권침해를 유발한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인권경영지침 제9조)</li> </ul> |
| 모니터링 실시             | -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시행 근거 마련(인권경영지침)<br>⇨ 인권실태조사 시행 시, 협력회사 및 구성원을 포함해 공급망에 의한 인권 침해 예방   |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내규에 보안교육, 비밀의 보호, 시설보안, 보안사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

- 현지주민 인권보호

| 구분                   | 세부내용   |
|----------------------|--|
| 지역주민<br>인권존중         | - 인권경영선언문에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 존중 명시  |
| 지역주민의<br>지적재산권<br>보호 | - 공단 저작권정책 마련 및 공개<br>- 사천바다케이블카 관광사진 공모전 공고에 출판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 및 활용, 제3자 제공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출판자에 의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안내 |

- 환경권 보장

| 구분                        | 세부내용   |
|---------------------------|--|
| 환경경영<br>체제 수립             | - 인권경영선언문에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노력 명시<br>- 친환경 경영을 위한 종합 추진 체계 구축(에너지 절감, 에너지 고효율화, 전기자동차 우선구매, 케이블카 태양광발전설비 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온실가스 감축 목표제 시행,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등)   |
| 환경정보의<br>공개               | - 월별, 분기별 환경정보 의무공개 원칙   |
| 환경문제에<br>대한 예방적<br>접근의 원칙 | - 환경시설관리는 공단의 고유 업무로 지역 내 발생하는 하수, 분뇨, 하수 찌꺼기 처리 등 자연환경 보호(공공수역의 수질 및 자연환경 보호, 방류 하천 및 남해안 수질 개선, 하수로 인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 제거, 슬러지 자원화를 통한 폐자원의 재활용 및 2차적 환경오염 예방)<br>- 매월 정기적으로 실내수영장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공고 및 실내공기질 인증 취득(사천바다케이블카, 실내수영장)             |
| 비상계획<br>수립                | - 재난안전 계획 수립 및 시설별 담당자 지정, FMS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안전우려시설의 위해·위험 요인 해소,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br>-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매뉴얼 지속 보완·수정, 유사시에 대비한 단계별 효율적 예방·대비·대응·복구 대책의 강화<br>- 지자체 및 소방서 합동 재난 대비 훈련 실시, 소방서, 경찰서 등과 협업을 통한 재난대비 훈련 시행 |

- 소비자인권 보호

| 구분               | 세부내용  |
|------------------|---|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선언문에 고객인권보호를 명시하고,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정보 공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성 확보</li> <li>- 인권경영선언문에 소비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명시하고, 주요운영 시설 및 서비스 웹페이지를 통해 사업 및 서비스 이용관련 상세 정보 제공</li> </ul>                            |
| 제품결합시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고충민원의 처리), 제3장(처리결과와 통지 및 확인점검 등), 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내규 제3장(고충민원의 처리) 규정에 따라 공단 서비스 및 프로그램 결합 시 이용자 보호조치 시행</li> </ul>  |
| 소비자 사생활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관리, 처리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권익침해 구제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li> </ul> |

□ 운영사업(사천바다케이블카)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 총평

| 구분       | 세부내용  |
|----------|---|
| 인권실사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사업 실행과정에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정립하고 있음</li> <li>- 노동환경 분야에서 케이블카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해당 사업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인권영향을 이해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규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li> <li>-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는 사천바다케이블카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자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종사자 대상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 및 정보접근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접근성,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공모전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사생활,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시행 중에 있음</li> <li>- 공정운영 분야에서는 인권경영지침,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취업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자 인권을 보호하고, 사업 참여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조치를 마련·시행 중에 있음</li> <li>- 고충처리 분야에서는 서비스 제공 참여자 및 이용자 대상 고충을 접수하는 채널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li> </ul> |

○ 주요사업(사천바다 케이블카) 인권영향평가 종합통계표

| 지 표       | 누계<br>(지표별) | 예  | 보완필요 | 아니오 | 정보없음<br>해당없음 |
|-----------|-------------|----|------|-----|--------------|
| 합계        | 23          | 22 | 1    | 0   | 0            |
| 1. 노동환경   | 6           | 6  | -    | -   | -            |
| 2. 이용객 보호 | 9           | 9  | -    | -   | -            |
| 3. 공정운영   | 4           | 4  | -    | -   | -            |
| 4. 고충처리   | 4           | 3  | 1    | -   | -            |

○ 주요사업(사천바다 케이블카) 체크리스트 결과

| 지 표       | 평가<br>점수 | 평가차트 |
|-----------|----------|------|
| 계 (평균)    | 96.9     |      |
| 1. 노동환경   | 100      |      |
| 2. 이용객 보호 | 100      |      |
| 3. 공정운영   | 100      |      |
| 4. 고충처리   | 87.5     |      |

○ 분야별 평가

- 노동환경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인권역량<br>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이블카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대상 해당 사업이 이용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인권영향에 대한 교육 제공</li> <li>- 해당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사고 시 처리 및 요원별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있음</li> </ul> |
| 노동권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규에 따라 법정근로 시간 준수, 휴게 공간 및 휴게시간 제공, 이용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 의한 괴롭힘 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음</li> </ul>                      |

- 이용객 보호

| 구분        | 세부내용  |
|-----------|---|
| 안전보장      | - 사천바다케이블카운영규정에 이용객 안전에 관한 종사자 대상 교육과 훈련, 케이블카 시설 및 안전관리, 요원별 행동수칙, 케이블카 고장 시 행동수칙에 대한 구체적 명시 |
| 접근성 보장    | - 공단 홈페이지 및 사업안내 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취득<br>-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이용시설 및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접근성 보장 조치 마련       |
| 사생활 보호    | - 이용객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내부방침에 따라 보호 및 처리되고 있음   |
| 지식 재산권 보호 | - 저작권 정책 및 사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정책에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준수 안내   |

- 공정운영

| 구분      | 세부내용   |
|---------|--|
| 공정계약    | - 임직원행동강령내규에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규정을 마련하고, 취업 규정에도 청렴의무 명시하고 있으며, 외부만족도 조사, 고객의 소리, 전화 민원, 국민신문고 등 채널을 통해 사업 참여자 의견 청취 |
| 인권침해 예방 | - 인권경영지침에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중 인권침해를 유발한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 하고,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시행 근거 마련   |

- 고충처리

| 구분   | 세부내용  |
|------|---|
| 모니터링 | - 고객의 소리, 전화민원, 국민신문고 등 이용객 및 사업 참여자 대상 고충을 청취하는 채널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음                            |
| 정책환류 | - 내·외부 감사, 매월 정기적으로 민원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는 등 정책환류 시스템을 구축<br>⇒ 접수된 고충의 처리 및 정책 반영 여부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 |

### ③ 2022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청렴도 및 갑질 실태조사

#### □ 조사배경 및 목적

-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성숙해 가면서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
-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개선과 제도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사회적 책임, 솔선수범 태도, 직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청렴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자율적 개선을 통한 소속 직원 청렴도 향상을 목적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부패 위험성을 진단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청렴성 유지 필요
- 고위직 개인의 행태와 함께 조직 환경과 업무환경의 전반적인 부패 위험도를 진단하여 향후 공직 수행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청렴 수준에 대한 객관적·체계적인 평가 필요
-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직자의 불친절 행위 및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을 예방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
- 내부 임직원이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청렴도 취약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개선 방안 마련
- 내부 임직원의 갑질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 내부청렴도 점수: 8.87점

- 청렴문화지수: 7.36점
- 업무청렴지수: 9.96점
- 항목별 결과
  - 청렴문화지수: 조직문화(7.65점) / 부패방지제도(6.87점)
  - 업무청렴지수: 인사업무(10.0점) / 예산집행(9.96점) / 업무지시 공정성(9.91점)

○ 부당행위 결과

- [인사업무]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발생하지 않음
- [예산집행] 관련 업무추진비 및 사업비 위법·부당집행 경험: 1건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 발생하지 않음
- [업무지시 공정성] 관련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1건(부당 지시)

| 구분        | 응답인원 | 발생건수 |
|-----------|------|------|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114명 | 3건   |

| 부패현황                 | 측정분야 | 측정영역      | 문항내용                   | 경험건수 | 부패확률  |
|----------------------|------|-----------|------------------------|------|-------|
| 기관내<br>발생비율<br>0.26% | 업무청렴 | 인사업무      | 금품·향응·편의제공             | 0    | 0%    |
|                      |      | 예산집행      | 위법·부당한 집행              | 1    | 0.88% |
|                      |      | 업무지시 공정성  |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 1    | 0.88% |
| 발생확률<br>0.88%        | 외부업무 | 외부부패 사례   | 외부업무 부당집행 및 수수행위       | 0    | 0%    |
|                      | 상급기관 | 상급기관 부패사례 | 상급 감독기관에 대한 금품·향응·편의제공 | 0    | 0%    |
|                      |      | 상급기관 부패사례 | 상급기관 호의적 평가 유도         | 1    | 0.88% |

□ 내부청렴도 세부 측정 항목

| 내부청렴도           |      |                        |       |                      | 8.87  |             |
|-----------------|------|------------------------|-------|----------------------|-------|-------------|
| 평가지수<br>(가중치)   | 점수   | 평가영역<br>(가중치)          | 점수    | 평가항목                 | 점수    | 문항          |
| 청렴문화<br>(0.422) | 7.36 | 조직문화<br>(0.631)        | 7.65  | 업무처리의 투명성            | 7.22  | 문1          |
|                 |      |                        |       | 업무처리의 책임성            | 7.40  | 문2          |
|                 |      |                        |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 8.06  | 문3          |
|                 |      |                        |       |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 7.51  | 문4          |
|                 |      |                        |       |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 처분    | 7.98  | 문5          |
|                 |      | 부패방지제도<br>(0.369)      | 6.87  | 부패행위 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 6.77  | 문6          |
|                 |      |                        |       | 부패행위 적발 처벌의 적절성      | 6.96  | 문7          |
| 업무청렴<br>(0.578) | 9.96 | 인사업무<br>(0.413)        | 10.00 | 금품 향응 편의 경험          | 10.00 | 문8,<br>문9   |
|                 |      | 예산집행<br>(0.330)        | 9.96  | 예산의 위법 부당 집행 경험      | 9.96  | 문11,<br>문12 |
|                 |      | 업무지시<br>공정성<br>(0.257) | 9.91  |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 9.91  | 문14         |

□ 결과분석 및 나아갈 방향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내부청렴도는 [8.87점]임
  - 평가영역 중 [청렴문화지수]는 [7.36점]으로 하위항목인 [조직문화] 항목은 [7.65점], [부패방지제도] 항목은 [6.87점]으로 평가되었고, [업무청렴지수]는 [9.96점]으로 하위항목인 [인사업무] 항목은 [10점] 만점을 받았으며 [예산집행] 항목은 [9.96점], [업무지시 공정성] 항목은 [9.91점]으로 평가됨
  - 앞으로도 청렴·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청렴도 취약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조직에서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 없이는 조직에 대한 신뢰 하락과 함께 근무의욕 상실, 사기 저하 등 조직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빠른 개선이 필요함
  -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정기적인 갑질 근절, 윤리 교육 실시가 필요함
- 기타 개선 방향
  - 업무지시 공정성 기준에 대한 상·하급자 간 인식 차이 해소가 필요
  - 사내 게시판, 설문조사, 상담 등을 통한 상·하급자의 인식을 사례로 정리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 실시
  - 부당한 업무지시 상담창구·신고센터 운영
  - 신분 노출 우려가 없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 운영
  - 신고제도의 긍정적 기능, 운영 배경과 취지 등 홍보
  - 신고처리 과정의 체계적 안내 및 우수 처리 사례 내·외부 공유
  - 실천 방안으로 반부패 인식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 간부들에 대한 실질적인 청렴 교육 강화 필요
  -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정확한 평가 시스템
  - 특정부서의 고속 승진 영향으로 부패인식이 확산 방지책 수립
  - 연차에 의한 직급 승진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
  - 자유로운 의견 제시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 삼진아웃제 도입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 청렴 사례를 활용한 교육 강화
  -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편성이 필요

#### 4 모범거래 모델 도입

- 추진분야: 대국민·협력업체 등 4개 분야
  - 對국민 거래: 소비자나 임차인과의 불공정 거래조건 개선 등
  - 對협력업체 거래: 부당계약을 유발하는 관행 차단 등
  - 민간기업간 거래: 협력업체-하도급업체 간 불공정행위 차단 등
  -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관 내 자율준수 제도 마련
- 추진방향
  - 공단 사업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 가능한 과제 발굴
  - 체크리스트 자체 점검을 통한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국민·협력업체 지원 방안 강구
- 모범거래 준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이행현황
  - 對 국민 거래관향 개선
    - 소비자 및 임차인과의 불공정 거래조건 개선

| 연번 | 체크리스트   | 이행여부 | 관련 내용  |
|----|---|------|--|
| 1  | 계약조건이나 약관에 지방공기업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 ○    |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br><br>-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공고문 포함) |
| 2  | 지방공기업(공급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급이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가?                                   | ○    |  |
| 3  |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규정은 없는가?  | ○    |  |
| 4  | 소비자가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 방식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계약조건은 없는가? | ○    |  |
| 5  | 계약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지방공기업을 ‘분양자’로 계약자를 ‘수분양자’로 표기했는가?   | ○    |  |
| 6  | 약관의 형태로 임차인의 질권 등 설정권을 침해하거나 소비자나 임차인의 권리(손해배상청구권 등)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    |  |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의 배상·환불조건 등 준수

| 연번 | 체크리스트  | 이행여부  | 관련 내용                 |
|----|--|-------|-----------------------|
| 7  | [공연업]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소비자가 입장료 환불을 요구할 때 입장료 전액 환불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가?                            | 해당 없음 |                       |
| 8  | [공연업] 공연시작 전 소비자가 입장료 환불을 요구할 때 공연 10일 전까지는 입장료 전액을 환불하고, 1일 전까지 70% 환불, 공연 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10% 환불을 규정하고 있는가?                  | 해당 없음 |                       |
| 9  | [숙박업] 성수기 주말,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소비자의 변심으로 계약취소 등)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는 이용요금의 80% 환불,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시 10% 환불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사천시 캠핑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10 | [체육시설업] 소비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불 및 입장료의 10%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

- 소비자·임차인에 대한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 개선

| 연번 | 체크리스트  | 이행여부 | 관련 내용  |
|----|--|------|--|
| 11 | 지방공기업이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예정에 없던 조치나,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주치를 하려면 사전에 그들과 ‘협의’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나 임차인은 그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12 | 소비자나 임차인이 지방공기업의 조치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지방공기업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거나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임대료 감면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    |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br>-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공고문 포함) |
| 13 |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가?   | ○    |  |
| 14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가?   | ○    |  |

- 소비자·임차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 연번 | 체크리스트  | 이행여부 | 관련 내용                       |
|----|--|------|-----------------------------|
| 15 | 배상·환불조건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이 인지하기 쉽게 고지되고 있는가?                                   | ○    |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 16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입주절차, 재계약기준, 계약해지 주의사항 등 임차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공고문 포함) |

○ 對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 사업계획·입찰단계부터 ‘부당계약’을 유발하는 관행 차단

| 연번 | 체크리스트  | 이행여부 | 관련 내용               |
|----|--|------|---------------------|
| 1  | 입찰참가자격을 특정한 면허 소지한 자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가?                         | ○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2  | 입찰자격이나 평가에 과도한 실적이나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 ○    |                     |
| 3  | 긴급입찰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긴급입찰로 진행해 단축된 입찰기간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5조제4항  |
| 4  | 경쟁입찰 대상사업에 있어 대체품이 있거나 대체품 유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 ○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5  | 사업 요구인력의 요건이나 인원이 사업내용 및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가?            | ○    | 사천시 알량사업규정 계약사업추진규정 |
| 6  | 경쟁입찰에서 특정규격의 제품을 연상시키거나 특정규격 기능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 ○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7  | 수행인력의 학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 ○    |                     |

- 계약체결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

| 연번 | 체크리스트   | 이행여부 | 관련 내용 |
|----|---|------|-------|
| 8  |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공사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대상자’로 표기했는가? | ○    |       |
| 9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처리절차 없이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    |       |

| 연번 | 체크리스트   | 이행여부 | 관련 내용           |
|----|---|------|-----------------|
| 10 |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 ○    |                 |
| 11 |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 ○    |                 |
| 12 |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 ○    |                 |
| 13 |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 ○    |                 |
| 14 | 과업 내용에 ‘그 밖에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 ○    |                 |
| 15 |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 ○    |                 |
| 16 |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 ○    |                 |
| 17 |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    |                 |
| 18 | 자회사와 업무위탁계약 시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이 부당히 저하될 정도의 낮은 대금으로 계약하지는 않는가?          | ○    | 임금 지불<br>약정서 징구 |

-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 비용·위험 전가행위 통제

| 연번 | 체크리스트   | 이행여부 | 관련 내용           |
|----|---|------|-----------------|
| 19 | 지방공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협력업체가 지방공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20 |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이 협력업체에게 가급적 외주를 주지 않고 자신의 책임 아래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가?   | ○    |                 |

- 산업안전에 관한 지방공기업의 책임 강화

| 연번 | 체크리스트   | 이행여부 | 관련 내용           |
|----|---|------|-----------------|
| 21 |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작업을 외주 주는 경우에도 지방공기업은 그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 ○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22 |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협력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금액을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    |                 |
| 23 | 과업수행 중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지방공기업에게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    |                 |

○ 민간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 연번 | 체크리스트   | 이행여부 | 관련 내용   |
|----|---|------|---------|
| 1  |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방지방안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가?                         | ○    |         |
| 2  | 원·하도급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을 먼저 검토하였는가?                      | ○    |         |
| 3  | 계약업무지침에 공동도급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
| 4  | 협력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
| 5  | 협력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을 향후 협력업체 평가·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    |         |
| 6  |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는 대금의 직접지급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가?                       | ○    |         |
| 7  |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업체, 투찰가격 등 주요 정보를 공정위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는 체계를 마련하거나 준비하고 있는가? | ○    | 나라장터 사용 |
| 8  | 입찰 참가업체의 서약서, 낙찰업체와의 계약서에 입찰담합에 따른 배상책임, 배상액 등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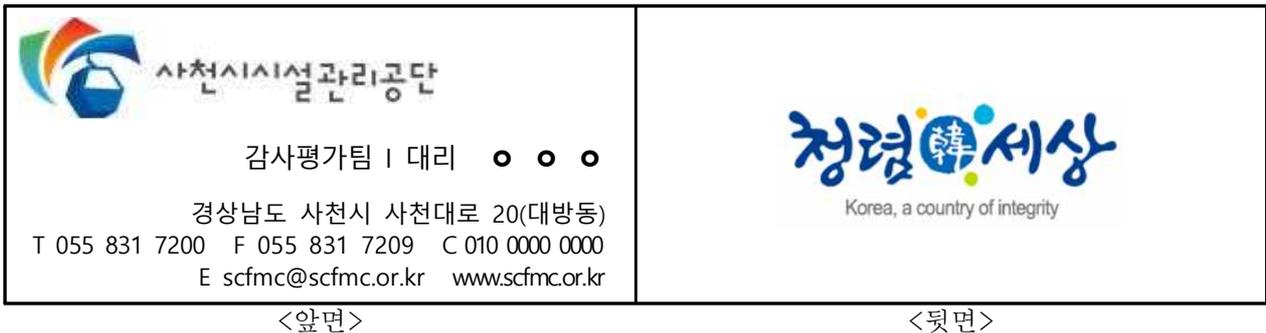
| 연번 | 체크리스트  | 이행여부 | 관련 내용                        |
|----|--|------|------------------------------|
| 1  | 모범거래모델 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관리부서”와 “담당임원”을 지정하거나 법무·감사·총무·사업 부서간의 협력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등 정기적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는가? | ○    | 이사장 주관 업무회의 등을 통한 수시 점검      |
| 2  | 하도급거래 자체 감독을 위해 감사부서에 “하도급 옴부즈만” 등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가?  | ×    |                              |
| 3  | 하도급업체들이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가?                       | ○    |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 및 갑질 신고 센터 운영 |
| 4  |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접수된 민원들은 이를 유발한 협력업체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감사부서(하도급 옴부즈만)에 제공토록 하고 있는가?                | ×    |                              |

□ 추진과제

| 분 야              | 주요 과제   |
|------------------|---|
| 對국민 거래관행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핑장 및 실내수영장 환불 관련 조례 개정 요구</li> <li>- 공단이 운영하는 비토국민여가캠핑장과 사천시실내수영장의 배상·환불 조건 등은 사천시의 조례(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따르고 있음</li> <li>- 다만, 그 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li> <li>- 해당 조례의 관리부서인 사천시 관광진흥과와 문화체육과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li> </ul> |
| 對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의뢰 전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 의무화</li> <li>- 계약체결 과정 중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점검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절차가 없거나 미흡함</li> <li>- 계약의뢰 시 “부당계약 특수조건 점검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담당자가 공문 작성 시 부당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개선</li> </ul>   |
|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확인 의무화</li> <li>- 입찰 사업 건에 대해서 해당 사업의 발주 담당자가 입찰 단계 중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의 점검을 의무화하여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내부 절차를 마련</li> <li>- “입찰담합 방지 체크리스트”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발주 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가 입찰담합 방지에 노력하도록 개선</li> </ul>  |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홈페이지 내 하도급 관련 신고센터 운영</li> <li>- 공단 홈페이지에 부조리 신고센터 및 갑질 신고센터 등을 운영 중</li> <li>- 기존의 신고센터로는 민원인이 하도급 관련 사항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음</li> <li>- 이에 홈페이지 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불법하도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li> </ul>  |

## 5 기타 추진상황

- 반부패 청렴명함 제작 및 활용
  - 추진배경
    - 청렴명함에 청렴한 세상 CI를 삽입하여 청렴의지 표명
    - 직원들의 청렴의식 내재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 추진현황
    - 대상자 : 일반직 직원 전체 및 일부 무기계약직 직원
    - 시행일 : 2022. 6월부터
    - 제작방법 : 기존 명함 시안에 청렴한 세상 CI 삽입
  - 청렴명함 제작
    - 규격 : 9cm × 5cm



- 청렴지킴이운영
  - 추진방향
    - 반부패체계 고도화를 위한 청렴 조직 문화 확산
    - 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청렴 활동 발굴
    -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직원들의 유대강화 기회 제공
  - 추진개요
    - 운영기간: 2022. 7. ~ 12.(6개월 간)
    - 구 성 원: 감사평가팀 직원 및 부서별 1명(대리급 이상)
  - 주요 역할 및 임무
    - 청렴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 반부패 정책에 대한 솔루션, 청렴 교육 및 정책 전파
    - 청렴 홍보 캠페인 실시
    - 청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 업무 분야별 비위 예방 및 법령 준수를 위한 과제 발굴
    - 부패 취약분야 분석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등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유지

○ 추진목적: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부패방지 프로세스 표준화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렴·반부패 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최초인증: 2021. 12. 15. / 3년

- 사후심사: 2022. 12. 15. / 1년 마다 사후 심사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조직의 뇌물수수 방지 및 뇌물수수 리스크 감소를 위한 부패 방지 경영의 국제 표준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절차

|      | 업무진단 및 준비  | 프로세스 구축   | 프로세스 실행  | 인증심사   |
|------|--|---|--|--|
| 목표   | 현 프로세스 파악 및 구축방안 설정  | 프로세스 수립 경영시스템 구축  | 프로세스 실행 및 평가   |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
| 추진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T 구성</li> <li>- 기본교육 실시</li> <li>- 추진계획 수립</li> <li>- 프로세스 업무분석 및 진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세스 설계 및 시스템 구축</li> <li>- 업무별 프로세스 표준문서 작성</li> <li>- 문서검토 및 승인</li> <li>- 문서실행 전 교육</li> <li>- Work Sho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 수립</li> <li>- 성과지표 설정</li> <li>- 목표 및 추진 계획 수립</li> <li>- 경영시스템 실행</li> <li>- 내부심사/경영 검토</li> <li>- 실행 문제점 보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심사</li> <li>· 1단계(문서)</li> <li>· 2단계(현장)</li> <li>- 시정조치</li> <li>- 인증획득/등록</li> <li>- 사후관리 계획</li> </ul> |

○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조직의 윤리경영, 준법경영 실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Tool 확보
- 공급망 전체에 걸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 문제발생에 따른 사업의 중단, 조사 및 처리로 인한 자원과 비용의 손실 감소
- 윤리경영, 준법경영이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 수행 시 경쟁우위 제고
- 조직의 윤리경영, 준법경영에 대한 정부시책에 동참하고,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
- 정부/고객/투자자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윤리경영, 준법경영에 대한 조직의 실천의지를 대외에 제공하고 조직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음

### Ⅲ. 총 평

### Ⅲ. 총 평

- 2022년 공단은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인권경영위원회를 재구성 등 2021년 인권경영 미흡사항에 대한 적극적 개선활동을 실시하였음
  - 체크리스트를 통한 인권경영 선언문 항목별 이행현황 점검
  - 2023년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시 내·외부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인권경영 선언문 개정 필요
  
- 자체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기반지식의 부족, 문항선택 등 평가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음
  - 평가지표에 공단과 관련이 없는 문항들이 있어 평가에서 제외되는 지표가 많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공단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지속적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함
  -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평가위원과 평가를 받는 주관부서에서 평가 지표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공단의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하여 충분한 설명 및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1개 사업(사천바다 케이블카)로 2년 간 진행됨에 따라 차년도 평가 시, 제외된 사업을 선정·평가하여 고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 및 예산의 규모, 사업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2022년도 주요사업 평가 시에는 하수처리시설 선정을 검토 필요
  
- 공단의 인권경영 확산 및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첫 실시한 ‘청렴도 및 갑질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의 강화가 필요
  - 전문가 초청을 통한 집체교육, 인권침해 신고센터 알림, 고충 상담 창구 강화,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가 요구됨